

2021년 종료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연구정산팀, '23. 12. 4.)

◇ 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지적사례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1.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주요 지적내용
인건비	·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에게 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 취업자에게 인건비 지급('20년도 인문사회분야 규정 적용 과제)
연구활동비	· (회의비) 외부기관 참여자 없이 회의비 집행
	· (출장비) 자체 기준 적용 위반(관내/외 출장 미적용)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자체 기준 적용 위반(기준 단가 미적용)
	· (그밖의비용)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매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도입 2개월 미준수
연구수당	· 실집행 인건비 20% 초과 집행
간접비	· 연구기간 외 연구비 집행
기타 사용기준	· 위탁연구과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차액 미반납
	·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후 차액 미반납

2. 주요 사례

① 인건비 기준 위반 사례

□ 지적내용

- A기관은 과제 참여연구자 ○○○ 교수(B대학 전임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사용기준 제39조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함

< 관련 규정 >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기관별 인건비 사용기준 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② 연구활동비(출장비) 기준 위반 사례

□ 지적내용

- 연구책임자 해외 기관 파견에 따라 관련비용(항공료)을 집행함

□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사용기준 제10조제4호에 따라 출장비는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로 사용 가능하나 해외 파견 관련 지원 비용은 집행 불가함
- 법 제4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등 제한적으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확인 필요함

< 관련 규정 >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③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준 위반 사례

지적내용

○ 자체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함

※ (연구기관 전문가 활용비 기준표) 시간당 7만원 이내, 1일 최대 8시간 초과할 수 없음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자체 기준에 따라 시간당 지급 금액과 1일 최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④ 연구시설·장비비 기준 위반 사례

지적내용

-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 연구장비를 도입함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사용기준 제2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장비를 구입(도입·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⑤ 연구수당 기준 위반 사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사례

지적내용

- 전년도 연구수당을 이월하고 당해연도 연구수당과 함께 집행함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계획보다 초과하여 집행 불가능함. 2019년 연구비로 이월된 연구수당은 2020년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음. 또한 2020년, 2021년 과제는 단계 연구기간으로 적용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text{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times \text{참여연구원이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이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20년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대상, 사업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 사례1 : 1단계('18~'22년, 5년) 연구개발과제의 당해 연구개발기간이 2021.1.1이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6.30.)	'21년 (20.7.1.~21.6.30.)		'22년
				'20.7.1. ~20.12.31.	'21.1.1. ~21.6.30.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종전규정	혁신법 적용	
정산기준				혁신법 적용		
회수기준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		

부록

참고자료

○ 과학기술/이공분야

관련법령	지침(고시)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사용기준	관리제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 인문사회분야

관련법령	가이드라인
학술진흥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 자료검색 ※용량 등의 제한으로 검색처 안내

구분	웹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령(현행법령) 내 검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현행행정규칙) 내 검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https://www.msit.go.kr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목록>그밖의 주요정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이지바로 접속)	https://www.gaia.go.kr/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이아 접속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EZbaro 접속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사용 매뉴얼 * 시스템 로그인 및 사용법 *	https://www.gaia.go.kr/ ※ 자료실>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가이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www.zeus.go.kr (장비활용종합포털) http://red.zeus.go.kr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목차(시행 '22.12.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1절~제7절>

제1절 사용용도	제2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7절 사용절차 등
제5조 직접비와 간접비	제18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제70조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제6조 인건비	제19조 연구개발비 지급	제71조 연구개발비
제7조 학생인건비	제20조 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	지급 이전의 사용
제8조 연구시설장비비	제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 기준	제72조 연구개발비사용
제9조 연구재료비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 기준	증명자료의 보관
제10조 연구활동비	- 이하 공통 사용기준 -	
제11조 연구수당	제23조 연구시설장비비	
제11조의2 보안수당	제24조 연구재료비	
제12조 위탁연구개발비	제25조 연구활동비	
제13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26조 연구수당	
제14조 연구개발부담비	제26조의2 보안수당	
제15조 인력지원비	제27조 위탁연구개발비	
제16조 연구지원비	제28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17조 성과활용지원비	제29조 연구개발부담비	
* "사용용도" 생략	제30조 인력지원비	
	제31조 연구지원비	
	제32조 성과활용지원비	
	제33조 연구개발비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목차(시행 '22.12.21)

제3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 제34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 제35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 제36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 제37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38조 정부출연기관 현금·현물 구분기준
- 제39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 제40조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제41조 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제42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
- 제43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 제44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제5절 기타비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 제52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 제53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 제54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 제55조 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56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 제57조 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 제58조 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제59조 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 제45조 대학 연구개발비 구성·지급·이관
- 제46조 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47조 대학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 제48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 제49조 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제50조 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제51조 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제6절 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 제60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 제61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 제62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 제63조 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64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 제66조 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 제67조 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 제68조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제69조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목차(시행 '22.12.21)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

제74조 사전 승인 절차

제4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제75조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제76조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제77조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제78조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이자 납입

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제79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제80조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제81조 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제82조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제83조 연구개발비 회수

제84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제85조 연구개발리 회수의 유예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86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제87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좌의 설정

제88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제89조 학생인건비의 계상

제90조 학생인건비의 사용

제91조 학생인건비의 지급

제92조 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제93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제94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목차(시행 '22.12.21)

- 제95조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 제96조 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 제97조 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
- 제98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 제99조 전담기관의 지정·지원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 제100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 제101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 제102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운영
- 제103조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 제104조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 제105조 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
- 제106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점검
- 제107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 제108조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 제109조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자 사용
- 제110조 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 제111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제8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제112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
- 제113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 제114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제115조 전담기관의 지정·지원

제9장 보칙

- 제116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 제117조 재검토기한